

다문화가족 학생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7.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률 제11284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학생의 대학생활과 학생권익 보장을 위한 대학의 책임을 명백히 하여, 학교 내의 학습, 생활 등 모든 대학생활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교육에 있어서 진정한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의 다문화가족 학생(외국인학생 포함)은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의 학생을 말한다.

제3조(차별금지 등) ① 다문화가족 학생은 학생권, 학습권, 생활복지권 등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대학구성원 모두는 다문화가족 학생을 이유로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학구성원 모두는 다문화가족 학생을 비하·모욕·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문화가족 학생의 대학생활에 관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학의 책임) 대학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며, 학교 내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생활의 질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5조(학생지도위원회의 역할) 학생지도위원회는 다문화가족 학생의 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대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한다.

제6조(교수-학습) ① 다문화가족 학생이 그 학생의 수학능력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학과(전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은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일반학생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 및 취업지도) ① 대학은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전문적 상담 및 진로지도를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다문화가족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은 취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다문화가족 학생에 관해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